

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[] 대기	[] 수질	[] 소음·진동	[] 실내공기질	[] 악취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)	생년월일
	상호(사업장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 :)	

신청내용	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)
	실험실소재지 (전화번호 :)
	측정대행 항목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.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.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 3. 국가기술자격증 4. 삭제 <2017. 7. 17.>	분야별 10,000원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시·도 또는 대도시(측정대행업 담당부서)